

청렴자문위원회규정

3-1-28

규정번호	3-1-28
제정일자	2016.9.28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4차 개정
관리부서	예산감사팀

제1조(목적) 우리대학 소속 교직원등 중에서 지정되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
2.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3.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4. 그 밖에 법 시행 ·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02.06.)

② 당연직인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7.24.)

③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제5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5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명지전문대학 규정 / 3-1-28 청렴자문위원회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제3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